

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1년 10월 8일
- 회부일자 : 2001년 10월 9일

3. 제안이유

- 스포츠과학을 바탕으로 예방의학 차원에서 도민의 건강검진과 체력 측정 및 운동처방을 위하여 설치한 센터가 도민들이 체력단련시설인 헬스센터로 인식, 이용도가 저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거양 할수 없으므로
- 검진사업과 운동처방의 종합적인 건강관리 기능에 적합한 명칭으로 개정하여 도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명문화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- 조례의 제명을 “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”를
⇒ “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”로 함
- 도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센터 위치를 “**캠부시 관내**” 로 하고
“**체력센터**” 를 “**센터**”로 조정함
- 위·수탁기관 및 운영인력 중 필요한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신설함
(제5조의2, 제10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 이는
- 현재 청주시 운천동에 소재하여 운영중에 있는 도민체력센터가 명칭 때문에 단순히 체력단련시설로 잘못 인식되어 주민의 이용도가 저조하는 등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
- 센터의 명칭을 검진사업과 운동처방의 종합적인 건강관리 기능에 적합하게 변경하고,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명문화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,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